

#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(안)

## 검 토 보 고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1996년 12월 21일

나. 회부일자 : 1996년 12월 21일

3. 제안이유

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과 업무추진의 일원화로 자치단체의 능률성을 높이고 행정추진을 간소화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함.

4. 주요골자

- 현행 위임조례의 관장부서 재분류 및 위임체제를 재정비하여 전면개정
- 관계법령의 개정·폐지 등에 따른 사무의 위임근거 일치
- 기존 위임된 사무중 업무성격상 도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사무환원
- 도지사 권한 사무중 시장·군수·출장소장이 처리하는 것이 주민편의 증진 및 행정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사무 신규위임.

## 5. 검토의견

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

이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,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

그 주요 내용으로는

- 본 조례의 제2조 제목을 " (권한의 위임 및 위탁사항) " 을 " (권한 위임 및 위탁사항) " 으로 하고 도지사가 관장하는 지방산업단지의 관리 권한을 위임·위탁하는 항목을 신설하였고, 제5조의 제목을 " (위임 및 책임의 표시) " 를 " (위임처리 금지)" 로 하고 " 소속 직원에게 위임 하여 전결하게 하거나" 의 내용을 삭제하였으며
- 준용 규정에 있어서 " 권한의" 를 " 행정권한의" 로 하고 행정권한의 위임 위탁에 관한 규정 앞뒤에 " " (인용부)를 붙이도록 하였고
- 권한 위임사무의 별표1·2·3과 민간위탁 사무의 별표4를 전면 개정하고 산업단지 관리권한 위임·위탁기관을 별표5로 신설하는 내용으로서

본 개정 조례안은 주민편의 증진과 자치단체행정의 능률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승인하여 준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## 첨 부

-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(안) 1부